



종로학원하늘교육 학원/센터

정보공개서

(주)하늘교육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주)하늘교육

<주의사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한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534

Tel. 02)761-3200 Fax. 02)780-6595

하늘교육 사업1본부 Tel. 02)761-3200 Fax. 02)780-3049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하늘교육	종로학원하늘교육 학원/센터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534 (대치동)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1999. 8. 6.	1999. 8. 1.	임성호	02-761-3200	02-780-6595
	법인등록번호	110111-1748940	사업자등록번호	116-81-75824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학원/센터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534 (대치동) (주)하늘교육 (대표이사)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임성호	02-761-3200	02-780-6595	
		종로학원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534 (대치동) (주)종로학원 (이사)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웅민	02-392-1881	02-364-7562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김웅민	종로학원하늘교육 학원/센터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534 (대치동) (주)하늘교육 (이사)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임성호	02)761-3200	02)780-6595	
		종로학원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534 (대치동) (주)종로학원 (대표)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웅민	02-392-1881	02-364-7562	
서초종로학원 2관학원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5 (서초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웅민	02-3472-1881	02-3472-9105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윤석원	종로학원하늘교육 학원/센터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534 (대치동) (주)하늘교육 (이사)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임성호	02)761-3200	02)780-6595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이종상	종로학원하늘교육 학원/센터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534 (대치동) (주)하늘교육 (감사)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임성호	02)761-3200	02)780-6595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정선영	종로학원하늘교육 학원/센터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534 (대치동) (주)하늘교육 (이사)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임성호	02)761-3200	02)780-6595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관계사	(주)종로학원	종로학원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534 (대치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응민	02-392-1881	02-364-7562
	법인등록번호	110111-5632173	사업자등록번호	385-88-00011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종로학원하늘교육 학원]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종로학원하늘교육 학원	
상 호	종로학원하늘교육 OO학원	해당지역 초등학교명을 기준으로 명칭사용 해당 광역시/구를 기준으로 명칭사용
상표(서비스표)		상표 등록번호: 41-0392559-0000
	하늘교육MEX	하늘교육 수학 대표 브랜드 (서비스표 등록번호 제41-0091338-0000호)
	초등내신 대비 MEX	하늘교육 초등수학 내신 브랜드
	중등내신 대비 MEX	하늘교육 중등수학 내신 브랜드
	하늘교육 C-MEX	하늘교육 사고력수학 브랜드
	하늘교육 SCIENCE	하늘교육 과학 대표 브랜드
	하늘교육 C-SCIENCE	하늘교육 실험과학 브랜드
	하늘교육EPS	하늘교육 영어 대표 브랜드
	SKY VOCA	하늘교육 영어단어교재 브랜드
	하늘교육SEG	하늘교육 국어·논술 대표 브랜드 (서비스표 등록번호 제41-0091339-0000호)
	학교시험 만점학습	하늘교육 내신교재 브랜드
광 고		
그 밖의 영업표지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손실)	당기순이익 (손실)
2016년	53,296,807	26,036,046	27,260,761	42,149,407	2,754,997	1,991,229
2017년	50,442,508	20,830,608	29,611,901	43,425,749	2,862,889	2,351,140
2018년	50,105,470	18,314,996	31,790,473	42,451,727	2,607,806	2,178,573

그 근거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현재기준)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임성호	대표이사	2011. 4. ~ 현재	(주)하늘교육 대표이사	회사 업무 총괄
	김응민	이사	2019. 1. ~ 현재	(주)하늘교육 이사	회사 업무 총괄
	윤석원	이사	2019. 1. ~ 현재	(주)하늘교육 이사	회사 업무 총괄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정선영	이사	2018. 3. ~ 현재	비상근 이사	-
	이종상	감사	2018. 3. ~ 현재	비상근 감사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18년 12월 31일	2	2	97

※2019년 현재 상근임원 3명(전년 대비 1명 증가)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관계사	임성호 (주)종로학원 (이사)	가맹사업경영	2015.02.~현재	종로학원 (등록번호 : 20090100594) 라는 영업표지의 교육서비스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종로학원 하늘교육 (상표권)	학습지제작, 교육시험, 인터넷학습	2016.03.24. 출원 2017.03.28. 등록	출원 제41-2016-0013798 등록 제41-0392559-0000	(주)하늘교육	2027.03.28
(주)하늘교육 (상표권)	학습지제작, 교육시험, 인터넷학습	1999.08.12. 출원 2000.11.24. 등록	출원 제41-1999-0011678 등록 제41-0064903-0000	(주)하늘교육	2020.11.24
하늘교육 MEX (상표권)	학습지제작, 교육시험, 인터넷학습	2002.02.19. 출원 2003.06.26. 등록	출원 제41-2002-0003625 등록 제41-0091338-0000	(주)하늘교육	2023.10.01.
하늘교육 SEG (상표권)	학습지제작, 교육시험, 인터넷학습	1999.02.19. 출원 2000.06.26. 등록	출원 제41-2002-0003626 등록 제41-0091339-0000	(주)하늘교육	2023.10.01.
하늘교육 C-SCIENCE (상표권)	학습지제작, 교육시험, 인터넷학습	2011.09.20. 출원 2013.01.22. 등록	출원 제40-2011-0051103 등록 제40-0950009-0000	(주)하늘교육	2023.01.22.
하늘교육 Pre-MEX (상표권)	학습지제작, 교육시험, 인터넷학습	2011.09.20. 출원 2013.01.22. 등록	출원 제40-2011-0051102 등록 제40-0950079-0000	(주)하늘교육	2023.01.22.
하늘교육 SCIENCE (상표권)	학습지제작, 교육시험, 인터넷학습	2011.09.20. 출원 2013.01.22. 등록	출원 제40-2011-0051101 등록 제40-0950038-0000	(주)하늘교육	2023.01.22.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종로학원하늘교육 학원/센터] 가맹사업 현황

1. [종로학원하늘교육 학원/센터] 를 시작한 날: 1999년 11월 1일

2. [(주)하늘교육]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하늘교육	종로학원 하늘교육 학원/센터	임성호	1999.11.1. ~ 현재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534

3. [(주)하늘교육] 업종

영업표지	업종	
종로학원 하늘교육 학원/센터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교육서비스업(교과)	교재출판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종로학원하늘교육 학원/센터]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수

(단위: 개)

지역	2016.12.31.			2017.12.31.			2018.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25	121	4	112	108	4	102	98	4
서울	29	25	4	26	22	4	23	19	4
부산	3	3	-	2	2	-	2	2	-
대구	18	18	-	18	18	-	19	19	-
인천	10	10	-	8	8	-	6	6	-
광주	4	4	-	4	4	-	3	3	-
대전	11	11	-	10	10	-	11	11	-
울산	3	3	-	2	2	-	4	4	-
세종	1	1	-	1	1	-	-	-	-
경기	15	15	-	13	13	-	11	11	-
강원	3	3	-	4	4	-	2	2	-
충북	4	4	-	4	4	-	4	4	-
충남	3	3	-	2	2	-	2	2	-
전북	4	4	-	3	3	-	3	3	-
전남	1	1	-	1	1	-	1	1	-
경북	8	8	-	7	7	-	6	6	-
경남	4	4	-	4	4	-	3	3	-
제주	4	4	-	3	3	-	2	2	-

5. 바로 전 3년간 [종로학원하늘교육 학원/센터]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16	130	17	22	4	2	121
2017	121	2	14	1	2	108
2018	108	9	14	5	2	98

[종로학원하늘교육 학원/센터] 가맹점의 자세한 내역은 별지를 확인하십시오.

6. [종로학원하늘교육 학원/센터]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종로학원하늘교육 학원/센터]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포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16.12.31	2017.12.31	2018.12.31
관계사	(주)종로학원	종로학원	20090100594	교육서비스업	12/11	14/13	15/12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종로학원하늘교육 학원/센터]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18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18년 말 가맹점 수	2018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98	87,117	1,584	246,330	6,076	50,400	435	
서울	19	97,813	1,844	199,920	4,505	50,400	840	
부산	2	해당없음						5곳 미만
대구	19	88,819	1,684	242,970	4,050	50,400	775	
인천	6	120,330	2,383	182,280	6,076	57,330	1,024	
광주	3	해당없음						5곳 미만
대전	11	71,912	1,088	173,670	2,481	50,400	435	
울산	4	해당없음						5곳 미만
세종	-	해당없음						
경기	11	89,502	1,525	235,830	3,434	50,400	444	
강원	2	해당없음						5곳 미만
충북	4	해당없음						5곳 미만
충남	2	해당없음						5곳 미만

전북	3	해당없음						5곳 미만
전남	1	해당없음						5곳 미만
경북	6	96,075	2,016	145,740	3,835	50,400	1,008	
경남	3	해당없음						5곳 미만
제주	2	해당없음						5곳 미만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다음의 산식을 따른 것입니다.]

[매출액 = 과목당 평균 수강료 210,000원×해당 학원 2018년 총 과목 수]

-교재 신청수가 월평균 20과목 미만인 교육원은 실제 회원수×수강료 210,000원×12개월을 적용하였습니다.

[당사가 보유한 가맹점사업자 원가 분석 자료에 따르면 물품 공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8%~20%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역산하여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가맹본부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종로학원하늘교육 학원/센터]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서울, 경기, 인천	강남지국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534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박용택 지국장	02)780-9143	21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1999.08.01~	×	×	×
서울, 경기, 강원	강북지국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534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이영석 지국장	02)780-3048	17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1999.08.01~	×	×	×
대전, 충청도	대전지국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 223번길 (대우토피아 501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강준신 지국장	042)470-6202	17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1999.08.01~	×	×	×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대구지국	대구시 수성구 범어천로 126 코오롱하늘채상가 206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조석종 지국장	053)422-3201	34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1999.08.01~	×	×	×
광주, 전라도, 제주도	광주지국	광주시 서구 화개중앙로 71(금호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양경렬 지국장	062)371-3202	9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1999.08.01~	×	×	×

※ 관리 가맹점수는 2018년 12월말 관리 가맹점 수 기준임

9. 광고·판촉 지출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당사에서 [2018년]에 [종로학원하늘교육 학원/센터]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33]쪽을 참고하십시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363,621	363,621	0	
광고	소계	연중	220,489	220,489	0	
	(비공개)	연중	115,835	115,835	0	(비공개)
	(비공개)	연중	104,654	104,654	0	(비공개)
판촉	소계	연중	143,131	143,131	0	
	(비공개)	연중	143,131	143,131	0	(비공개)

10.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주)국민은행 증권타운지점	영업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 1층(여의도동 신송빌딩)	02)783-7692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국민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국민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하늘교육을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 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1.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없음]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종로학원하늘교육 학원]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이행보증금, 인적보증 등의 추가 담보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계약체결 비용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재계약 계약체결 비용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1) 계약체결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금	교사용지도서	2,700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반환되지 않음	가맹점 운영과 관련한 책자 및 자료 제공 대가임
	신규교재 전세트 /인쇄물	2,000			
	문제은행 출력물 /입시정보책자	300			
	상호사용료	별도 징수 없음 (단, 상호표지 의무 준수해야함)			
계	5,000				

※이외별도 제공하는 책자에 대해서는 정가 또는 원가로 추가 징수 할 수 있음.

2) 당사는 귀하에게 계약이행 보증금, 인적 보증 등 담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가맹금	5,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영업 중 매주 신청한 교재 수에 따른 교재비용 외 다른 비용은 없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당사 사업1본부 (전화:02-761-3200)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담당지국장 배정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점 입지 최종 확정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	교육관련업 종사자 우대
종업원, 강사	-	별도의 기준 없음 단, 강사의 경우 전공자 우대 (가맹점에서 채용, 관리 전담 함)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해당사항없음]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맹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사항없음]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는 매주 신청한 교재 수에 따른 교재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해당사항 없음]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해당사항 없음]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재계약 체결비	교사용지도서	2,700	계약연장(갱신) 후 3일 이내	반환되지 않음	가맹점 운영과 관련한 책자 및 자료 제공 대가임	신규점의 약 60% 수준
	문제은행 출력물 /입시정보책자	300				
	상호사용료	별도 징수 없음 (단, 상호표지 의무 준수해야함)				
계		3,000				

※이외별도 제공하는 책자에 대해서는 정가 또는 원가로 추가 징수 할 수 있음.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단, 양수인이 동의하고 기존 가맹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와의 계약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와 당사간의 계약에 의해 취득하거나 부담하는 일체의 권리 의무를 당사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동의하에 영업 양도의 경우 영업양수인은 귀하의 당사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로학원하늘교육 학원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식별기호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계약 종료 후 7일 이내에 본사에서 유상으로 공급한 교재 및 지침서를 전량 폐기하여야 하고, 무상으로 공급한 교재 및 지침서를 반납하여야 하며 외부 및 내부Sign은 15일 이내 철거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본사에 이와 관련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주)하늘교육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입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당사는 [종로학원하늘교육 학원]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교재	초등 MEX	왼쪽에 기재된 제품을 통해서 반드시 교육을 진행해야 함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중등 MEX		
	고등 MEX		
	T-MEX		
	중간기말대비 MEX		
	C-MEX		
	Pre-MEX		
	방문 MEX		
	C-SCIENCE		
	SCIENCE		
	SEG 창의논술		
	SEG 국어통합논술		
	SEG 시사원정대		
	생각을 키우는 국어		
	초·중등 EPS		
	고급단계 EPS		
	SKY VOCA 240/480/720		
	SKY VOCA series		
	EPS Phonics		
	한국사체험		
	한국사탐구		
	한국사탐구논술		
	학교시험만점학습		
SRC			
GATE			
Why?science			
킬러수학 K-MEX			
Coding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가맹사업자 이외의 유사업체 (타학원 등)	가맹본부 교재 일체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위탁 구매 및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학원용·방문용 교재의 공급가 외에 종로학원하늘교육 학원에서 운영되는 용역(수업)에 대한 가격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학원을 통해 판매되는 일부 단행본 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가격 결정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공지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초등, 중등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보습학원	종로학원하늘교육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초등학교 1개교당 1개 학원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사업1본부 해당 지국장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해당사항 없음]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해당사항 없음]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상기 기재 사항 외 영업지역은 존재하지 않음

5.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종로학원하늘교육 학원]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1]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13]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사업자가 사전동의 없이 가맹본부의 영업지침을 어기고, 회원에 대한 관리를 해태한 경우	16조 1항-①
○ 가맹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재 판매대금을 가맹본부에게 납부하지 않는 경우	16조 1항-②
○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의한 제공물 이외의 학습물을 이용한 회원관리의 경우	16조 1항-③
○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경시대회 응시료 등 각종 비용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16조 1항-④
○ 계약상의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16조 1항-⑤
○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권리양도 및 담보제공 할 경우	16조 1항-⑥
○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인테리어 매뉴얼(회사로고 포함) 기준에 맞지 않는 인테리어 및 간판 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시정 요청을 받고도 2주 내에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16조 1항-⑦
○ 월 학력 진단 평가 의무시행을 준수하지 않고, 전국 초·중 영어/수학 학력평가를 등록된 모든 회원에게 참가하도록 노력하지 않았을 경우	16조 1항-⑧
○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계약상의 조항을 위반하여 상호간의 신의관계가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	16조 1항-⑨
○ 가맹본부가 지정한 교재 제작·공급자로부터 공급받은 자료를 가맹사업자가 공급 목적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판매한 경우	16조 1항-⑩
○ 가맹사업자가 매주 신청하는 교재 과목수가 70과목 미만일 경우(단, 신규 계약 시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16조 1항-⑪
○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하늘교육”이 포함된 상호·상표·도메인 등을 등록·사용한 경우	16조 1항-⑫
○ 기타 가맹사업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16조 1항-⑬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13]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사업자가 사전동의 없이 가맹본부의 영업지침을 어기고, 회원에 대한 관리를 해태한 경우	16조 1항-①
○ 가맹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재 판매대금을 가맹본부에게 납부하지 않는 경우	16조 1항-②
○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의한 제공물 이외의 학습물을 이용한 회원관리의 경우	16조 1항-③
○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경시대회 응시료 등 각종 비용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16조 1항-④
○ 계약상의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16조 1항-⑤
○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권리양도 및 담보제공 할 경우	16조 1항-⑥
○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인테리어 매뉴얼(회사로고 포함) 기준에 맞지 않는 인테리어 및 간판 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시정 요청을 받고도 2주 내에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16조 1항-⑦
○ 월 학력 진단 평가 의무시행을 준수하지 않고, 전국 초·중 영어/수학 학력평가를 등록된 모든 회원에게 참가하도록 노력하지 않았을 경우	16조 1항-⑧
○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계약상의 조항을 위반하여 상호간의 신의관계가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	16조 1항-⑨
○ 가맹본부가 지정한 교재 제작·공급자로부터 공급받은 자료를 가맹사업자가 공급 목적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판매한 경우	16조 1항-⑩
○ 가맹사업자가 매주 신청하는 교재 과목수가 70과목 미만일 경우(단, 신규 계약 시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16조 1항-⑪
○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하늘교육”이 포함된 상호·상표·도메인 등을 등록·사용한 경우	16조 1항-⑫
○ 기타 가맹사업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16조 1항-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와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매주 신청하는 교재 과목수가 70과목 미만]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16조 2항-①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16조 2항-②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16조 2항-③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1)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2)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3)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한 경우	16조 2항-④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통보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16조 2항-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6조 2항-⑥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16조 2항-⑦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16조 2항-⑩
○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16조 2항-⑪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16조 2항-⑫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부득이 계약내용을 변경 할 경우에는 [사전 별도의 공지

후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6.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당사가 운영하는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사업1본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동의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하늘교육 사업1본부 (02-761-3200)

[당사는 양도를 승인하면 양도인과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양수인과의 계약은 양도인의 잔여기간을 이행하고, 양수인이 원하는 경우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본부 동의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상속(또는 대리행사) 신청 → 당사 사업1본부 검토(30일 가량 소요) → 동의 여부 통지	
대리행사	본부 동의시 가능	본인이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업무위탁	불가능	-		

7.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동일 지역 내에서 [종로학원하늘교육 학원]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종로학원하늘교육 학원과 동일대상, 과목을 지도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사업1본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하늘교육 사업1본부 (02-761-3200)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종로학원하늘교육 학원]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개인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에 따른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3항목) ■ 교육상담 자료 보유 현황 ■ 교육지도 적합성 ■ 교육, 상담 장소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교육지도 및 상담환경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2회/1월	사업1본부 담당지국	
품질 관리(3항목) ■ 간판규정 ■ 학원 단독운영여부 ■ 타교재 사용여부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2회/1년	본사 홍보팀 교재연구소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주)하늘교육과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8.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종로학원하늘교육 학원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모집광고	전액	없음	별도 절차 없음	대중매체 광고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9.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 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5일 내외	학원500만원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5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4~43	
지역선정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동종업종 현황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 계약서 제공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29~28	
가맹금 예치	- 금융기관(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	D-28~27	학원500만원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 학원인가 가능 여부 확인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교육 실시	- 학원운영교육 실시	D-7	
운영 최종점검	- 전산, 교재, 홍보물 최종 점검	D-6~3(3일)	
학원 오픈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가맹본부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 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점 개설 및 수시	가맹본부의 소정 양식을 통해 '사업운용계획' (초기개설비용, 수강료, 개설지역 주변 주택현황, 학교 및 학원 현황 등)과 홍보 및 회원모집 전략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자문 지원하며, 가맹본부에서 직접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가맹본부 소정 양식 제공 → 검토 및 보완 → 사업운용 →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없음	문의: 하늘교육 사업1본부 (02-761-3200)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종로학원하늘교육 학원]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종로학원하늘교육 학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교재 구성 및 지도법 전산시스템 사용법 등	집단 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보수 교육	신규교재 소개 입시정책변화에 따른 운영방안 등	집단 강의	-매년 실시 -분기별 비정기적으로 실시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종로학원하늘교육 학원/센터]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비고
신규 교육	1일	-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매년 상반기·하반기 실시 분기별 비정기적으로 실시	-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해당 없음.]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사업1본부(02-761-3200)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www.edusky.co.kr] 또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